

성의 매춘화와 성매매(Sex Trafficking)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이 장 형

(천안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 I. 서론
- II. 성매매의 실태와 이에 대한 다양한 입장
 - 1. 성매매의 실태
 - 2. 성매매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
 - 3.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입장
 - 4. 급진적 여성해방론의 입장
- III. 성의 매춘화 및 상업화
- IV. 성매매와 관련된 윤리적 논점들
- V. 결론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ethical survey and evaluation of the sex trafficking in Korea. The sex trafficking, ruin, harlotry, prostitution, streetwalking contain similar concepts. These things are illegal acting according to the law of Anti-Prostitution Act. But there are many women relating to illegal jobs. We have to solve the problems, it is not easy. The reasons of problems are very complicate and diverse.

Actually, We can see three kinds of attitude in the issues. First is a liberal view point. Second is a social feministic view. Third is a radical woman-liberalism. In Kathleen Barry's studies, there are four steps of distancing, disengagement, dissociation and disembodiment. The Sex trafficking is related with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So We need to use the methods of individual and social ethical approaches.

Key Words: Sexual Trafficking, Sexual Essentialism

1. 서론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성매매 및 집창촌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율락, 매춘, 매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율락행위등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율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매매를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매음(賣淫)이나 매춘(賣春)은 ‘성을 사는 행위’를 덮어주고 ‘성을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하지 않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의 성과 몸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일본식 표현이기도 하다.¹⁾ 매춘을 영어로 표기하면 harlotry; prostitution; streetwalking이 된다. 그리고 매춘방지법은 the Anti-Prostitution Act, 율락은 ruin으로 표기한다. 성매매를 sex trafficking이라고 표기한 것은 2001년 특히 작년 7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국제적 인신매매의 출발지이자 경유지로 발표한 이후, 2002년 월드컵 개최로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성부에서 제작된 첫 번째 외국인을 위한 안내 리플렛에 "STOP SEX TRAFFICKING, 성매매는 국경 없는 인권침해입니다." 라는 타이틀이 사용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²⁾ 그동안 소위 ‘집창촌’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쉬파리 골목’의 화재로 5명의 여성이 사망, 2001년 2월 부산 완월동의 한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봉동 성매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4명의 여성이 질식사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군산 대명동 ‘쉬파리 골목’화재 참사는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즉 성매매는 하나의 인신매매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불법감금, 강간, 폭력, 경제적 착취 등 여성에 대한 여러 형태의 인권 유린을 발생시키고,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시급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여성계, NGO, 현장 활동가 집단과 정부는 힘을 모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2004년 3월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 하였다. 그런데 이

1) 성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 모두를 다루고 있으며, 여성을 봄이나 꽃으로 비하하는 표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성을 매매하는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성매매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가해지는 인권침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송인환, ‘성매매 필요악? 절대악?’ 월간 『말』 2004년 10월호 124~125쪽 참조. 국어사전을 보면 율락(淪落)은 ‘[몰락하여 타향에서 떠돌의 뜻으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거나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으로, 매음(賣淫)은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성매매라는 항목을 찾으면 없는 것으로 보아 아직 그 뜻이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http://www.dasi.or.kr:)의 성매매 상식 코너에서는 ‘율락 행위’등의 용어는 성매매를 매개로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범죄를 은폐하며, ‘매매춘’이라는 말은 성을 봄에 비유하고 있는 등,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까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란 용어가 성을 사고 파는 행위와 이들을 연결하는 알선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몸이 상품처럼 매매되는 현실을 명확히 하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것의 내용은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약취·유인, 율락여성의 해외 송출 및 국내 이송, 매춘 강요, 감금 등 불법행위 금지와 강력한 처벌조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제적 성매매 범죄로 인한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신고 및 상담 전화 안내를 담고 있다. 이는 성매매가 국내 문제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글에서도 성매매의 영어 표기는 sex trafficking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법률은 상당히 진보된 법으로 지금까지 성매매 알선범죄를 용인하면서 무분별하게 성산업이 확산되도록 방치하고, 나아가 성매매여성의 인권 침해를 외면해 왔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롭게 제정된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을 ‘윤락녀’라고 하여 처벌했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윤락행위, 매춘, 매음, 매매춘 등 다양하게 불려온 ‘성매매’ 또는 ‘성노동 매매’는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성산업’이 지방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정 구역 뿐 아니라 주택가에서까지 성을 사고파는 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성산업은 여성에 대한 분명한 폭력인 성매매를 정상적인 성관계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경향도 있다. 그런데 성매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들의 성윤리 의식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개인적인 관계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욕구, 인권, 폭력, 경제구조, 정치적 역학, 노동의 문제, 남성다움의 문제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답을 찾아 실천하는가에 대한 복합적인 윤리적 비판 및 분석을 요청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기독교 주요 교단과 윤리학계는 한국기독교의 중요한 공헌³⁾ 가운데 하나인 여성운동 특히 ‘여성의 인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성매매 문제 등 보다는 사회 정의, 생명 윤리, 환경 윤리, 대중 문화 등과 같은 거대담론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성매매 문제는 특별한 현장 활동가의 영역이거나 사회복지 차원의 영역으로 보아온 견해도 많았다. 기독교윤리학에서 다루는 ‘성(性)담론’의 주요 주제도 ‘동성애’, ‘성과 결혼’, ‘혼전 순결’, ‘낙태’, ‘이혼 및 혼외 정사’ 등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물론 성산업의 번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윤리적 실천이나 문화 운동을 펼치는 단체들도 있으나 아직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많다.

이제 성의 매춘화 과정과 성매매에 대한 윤리적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성매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생명과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본다. 거스타픈(Gustafuson)은 생명에 대해 논의 할 때 “우리 인간은 생명에 대한 청지기이며 동시에 그 생명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한다. ... 참여자로서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또 생명의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자각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을 발달시키고, 또 생명을 주신 목적을 이루도록 응답해야 한다.”⁴⁾고 주장한 바 있다. 책임은 하나님 및 우리와 더불어 사는 인간들 앞에서, 인간 삶의 공동체 앞에서 및 하나님의 피조물들 앞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시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성매매 행위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 사회 정의의 차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3)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기본적 인권의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가톨릭의 전래가 시작되면서 남녀는 모두 똑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상적 배경 하에 남녀평등의 인식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여성 지위 향상의 본격적 계기는 개신교의 선교와 함께 시작되었다. 개신교는 선교 초기부터 미국에서 여성 운동을 경험한 여성 선교사들이 입국하였으며, 그들은 교육, 의료 선교 활동 등을 통한 방법으로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근우회, YWCA 등을 통해 ‘인신매매와 공창제 폐지 운동’, ‘축첩제 폐지’에 앞장섰으나, 일제 말기와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로 강조해왔다.

4) J.M. Gustafuson, "God's Transcendence and the Value of Human Life", in *Christian Ethics and the Community* (Philadelphia: Pilgrim Press, 1971), p.141 스크래 & 폴 콕스, 『생명윤리학』, 김상득 옮김, 살림, 2004, 62쪽에서 재인용.

II. 성매매의 실태와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⁵⁾

성매매는 매매춘, 혹은 매춘, 매음, 율락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 한국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중심적인 법률은 ‘율락 행위 등 방지법’이었다. 이 법 제2조에서는 성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본 법에서 율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매매를 정의한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을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법의 정의상의 차이를 통해 성매매와 성행위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매매는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묵인 하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나아가 소위 향락산업, 유흥산업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거대한 하나의 업종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성매매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흔히 ‘원조교제’라 불리는 십대 성매수에서부터, 속칭 ‘미아리텍사스’, ‘청량리588’, 등의 집창촌 성매매, 티켓다방, 기지촌의 미군전용클럽, 룸살롱, 안마 시술소, 퇴폐이발소 등 산업형 성매매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 성매매의 실태

한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에는 87퍼센트의 한국 남성이 혼전 성관계 경험이 있으며, 이중 50퍼센트의 남성이 그들의 첫 성관계를 매춘 여성과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⁶⁾, 1990년

5) 성매매에 대한 법제도는 금지주의, 규제주의, 합법화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널리 적용되고 있는 매매춘에 관한 국제적 협약은 1950년에 제정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이다. 이 협약은 체결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1)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2)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제1조) (3)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자; (4)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제2조) 또한 제6조에서는 매춘중사자 또는 중사용자들이 특별등록,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나 행정규정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춘에 관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포함된 매춘에 관한 조항이다. 여성협약 제6조에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협약당사국은 4년마다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위의 두 국제협약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국가간에는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나 타인의 착취, 중간알선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매춘을 하는 당사자에 대한 규제여부는 국내법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매매춘협약에는 1962년에, 여성차별 철폐협약에는 1984년에 가입하였으며,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제협약이 아니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춘에 관한 또 하나의 국제적 기준은 1995년에 개최되었던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선언문과 행동강령"에 명시된 매매춘관련 항목이다. 즉 여성의 인신매매와 강제매춘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무장관실, 1995:66,73,74). 신혜수, “매매춘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매춘 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 방안”, 한국교회여성연합, 2~3.

대에는 68퍼센트에 달하는 젊은 군인들이 성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22퍼센트가 성매매를 통해 첫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련의 연구를 반영하면 약 백만 명의 여성들이 한국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15세에서 29세 사이의 한국 여성 중 20퍼센트에 달하는 숫자이다.⁷⁾ 1994년 4월 『한겨레21』에 따르면, 성매매 산업의 자본 규모가 1년에 약 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1999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은 총 23만 9,241개의 음식점과 술집과 숙박업소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는 1998년보다 14,439여 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룬살롱의 경우 1998년 2,016개였던 것이 불과 1년 후인 1999년에는 4,275개로 112퍼센트나 늘어나기도 했다.⁸⁾ 1990년대 후반 성행하기 시작한 십대 소녀들의 성을 사고파는 이른바 ‘원조교제’⁹⁾문제는 한국 사회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이 무렵 색다른 쾌락을 좇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여성 성 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성매매 산업의 확대는 1980년대 이후 경제 성장으로, 생계비 이외의 지출이 가능해진 중산층의 폭이 확대되는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한국의 성매매 실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매매에 대한 자유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 급진적 여성해방론에서 나타난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성매매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성매매에 관한 법적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 주권자로서 목숨이나 노동, 사유재산과 같이 자신에게만 연관된 부분에 한해서 절대적 독립성을 갖기 때문이다. 성의 매매는 다른 상품의 매매와 다를 바가 없으며, 법은 다른 계약에 관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성매매는 합법화되어야 하며, 성매매에서 일어나는 성행위는 다른 노동과 구분될 필요가 없게 된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반대하는 주요 논거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법적 불평등이라는 입장이다. 둘째는, 성매매에 대한 법적 제재는 성매매 여성의 지위 자체를 하나의 위반 사항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즉 창부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위반 사항이므로 창부에게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벌’을 가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개인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갖는 권리의 침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매매를 일체의 국가적 제재 없이 직업으로 인정하고 자유로운 영업까지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1980년대에 유럽에서 모인 World Whore's Congress에서 이 입장이 표출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는 성매매 여성들과 여성 운동가들

6) 장필화, 조형,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연구원 역음, 『여성학 논집』 제8집, 1991년. 127~170.

7) 한국에서 성매매 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다. 기존의 조사들도 상업적인 성매매 지역들의 숫자를 근거로 여러 여성 단체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만약 이같은 숫자가 사실이라면, 이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한국 여성 중 20퍼센트가 성매매 업에 관계되어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여성개발원이 1998년에 발간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에는 위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쉹 실링(Cheng Sealing), “한국 남자들의 ‘남자다움’을 향한 끝없는 욕구: 한국 사회 속의 성매매와 애국심”, 『당대비평』 20, 해외 기고, 256.

8) 『조선일보』 2000년 1월 21일자.

9) 1999년에 개봉한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과 2004년 개봉한 김기덕 감독의 ‘사마리아’는 원조 교제를 통한 성매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외에 성매매업을 하는 포주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고급콜걸들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의 약점은 설사 두 개인간의 성매매가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고 상호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계약 발생 이전부터 존재하는 불평등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계약을 맺게 되는 상황이나 그러한 계약으로 이끄는 경제적 강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동의에 기초한 계약 관계란 말은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즉 사회 안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맺게 되는 성매매의 계약은 설사 그것이 자유로운 동의의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강제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¹⁰⁾

3.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입장

사회주의적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자본주의 체제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논리는 “성매매가 노동자의 일반적인 성매매의 특정한 표현일 뿐”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에서 도출되며, 성매매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 체제와 사유 재산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 속에 포함되어 있다. 엥겔스는 성매매를 계급 사회의 부산물로 보았기에, 성매매는 사유 재산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몰락하면 그와 함께 사라진다고 보았다. 영국의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는 결혼을 “합법적 성매매”라고 간주하기도 했다. 또 골드만은 결혼한 여성이 한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것이나 성매매 여성이 여러 남자에게 몸을 파는 것은 정도의 문제일 뿐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경제적 필요에 의한 여성의 결혼과 경제적 필요에 의한 여성의 성매매 논리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더욱 정교해졌다. 이런 입장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와 임금 노동을 동일하게 간주했다. 이런 주장은 실라 로보탐(Shila Rowbotham)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 성매매 여성은 돈을 위해 사랑을 제공하며 노동자는 임금을 위해 그들의 손과 삶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경제적인 강압, 착취와 임금 노동의 소외를 표상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과 임금 노동자의 일반적 상태는 비인간적이라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계급적으로도 가장 비참하고 저급하다는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또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비평과 분석은 성매매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도덕주의 논리와 결별한 측면이 있다. 첫째로, 여성을 공적인 여성과 사적인 여성, 즉 타락하고 더러운 여성과 깨끗하고 정숙한 여성으로 나누었을 때, 성매매 여성을 전자의 여성으로 범주화시킴으로써 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 또는 도덕중심주의의 허울을 단호히 걷어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성매매를 하나의 고립된 현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상황과 결부시켜 파악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를 자본주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사회제도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사회 제도의 자본주의적 성격 자체가 변화되면 성매매는 필연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여성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고 생각했으며 그 때 남녀간의 사랑은 순수한 상호 이끌림 동기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성숙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비평의 단점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¹¹⁾ 첫째는, 성

10) 김혜숙, “경제적 합리주의와 매춘”, 『철학과 현실』 vol.17 1993, 189~91.

매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너무 일반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의 비평은 너무나 일반화되었고 덜 구체적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성매매 자체에 대한 비평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임금 노동자와 성매매 여성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 임금노동자는 계급에 의해 착취당하지만 성매매 여성은 성과 계급에 의해 이중적으로 착취당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전복되고 사유 재산제가 폐지되면 성매매가 필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예언은 빗나갔다. 성매매에 대한 엥겔스의 주장은 실증적인 자료와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볼 때 유효하지 못했다. 성매매의 오래된 형태인 사원(Temple) 성매매는 사유 재산제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역할에 의해 생겨난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4. 급진적 여성 해방론의 입장

급진적 여성해방론자들은 계급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성문제는 여전히 남으리라는 통찰에서 임금노동과 성매매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성매매는 남녀관계의 원형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스스로를 팔아왔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력의 남성 독점과 생물학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성욕이 강하다는 편견, 여성이란 무엇보다 성적 대상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는 한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평등한 두 개인으로서의 남녀간의 사랑이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급진적 해방론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성매매를 여성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남성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빈곤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강간 등의 성적 학대를 당한 후에 성매매를 하게 될 때, 과연 이점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성매매를 '일'로서 인정할 때 그 '일'을 하는 개인에게 매춘의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질문해야 된다고 본다. 이 입장은 Kathleen Barry를 중심으로 1980년에 말에 창립된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도 조직이 있다. 이 단체는 성매매 협약을 대신할 새로운 국제협약의 시안을 만들어 이를 선전하는 활동을 주로 해 왔다. 이제 성이 어떻게 매춘화(상품화)되는가를 캐슬린 배리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I. 성의 매춘화 및 상업화

현대 사회에서는 마르크스가 교환의 제2단계로 묘사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모든 것들이 교환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시대, 전반적인 타락과 보편적인 매물성의 시대, 물질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모든 대상이 그 가치를 가장 정확하고 엄밀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업적 가치로서 시장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¹²⁾라고 할 수 있다.¹³⁾

오늘날 우리는 온갖 것들을 사고판다.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 뿐 만 아니라 기술, 정보, 아이디어, 지식, 여가, 혈액, 장기, 서비스, 가상 공간에서 통용되는 가치 등 인간의 욕

11) 이성숙,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2002, 53~58.

12) 마르크스, 『철학의 빈곤』, 강민철, 김진영 역(아침, 1988), 31.

13) 김기덕 감독의 영화 “나쁜 남자”의 경우 여성은 모두 성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와 필요가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매매 및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매매하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가지면서 매매를 한다. 수요가 있으며 공급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성의 매매는 다른 상품의 매매와 어떻게 다른가? 또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불리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필리핀의 앙겔레스에 붙어 있는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한다. “여자란? 답: 섹스해주는 기구” 여기서의 여성은 과연 인간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게 된다. 성애화된 사회는 여성성을 그 핵심으로 획득물로 구성한다. 여성은 섹스화된 몸으로서 보편화되었고, 섹스를 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성들은 서로 구별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성 본질주의(sexual essentialism)이다. 이런 경우 여성의 성적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반면, 남성은 행위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한다. 성 본질주의는 불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억압을 생산해 낸다. 사회정치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만 주어지는 섹스는 없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조건은 생물학적 조건보다 우선한다. 성애화는 대중매체,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섹스의 ‘과학적인’ 구성물 안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통해 사회에 전달된다. 나아가 섹스를 사물로, 여성을 대상으로 환원시키는 성의 구성물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실체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조건이다. 캐슬린 베리는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 가부장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환원시킨 것이 성매매”라고 보며, “인간이 육체로 환원되고, 동의를 있건 없건 타인의 성적 서비스를 위한 도구로 화할 때, 거기에는 이미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 경험의 전체성에서 보면 여성이 그들의 몸으로 환원될 때 그리고 섹스화된 몸에 대한 성적 착취가 이루어질 때, 여성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타자로, 결국 종속된 자로 취급된다. 이것이 성적 착취이고, 존엄성과 평등이라는 여성 인권의 침해이다. 따라서 포르노그래피 매체들은 성적 탐닉에 빠져 있는 사회의 도구이며 강간은 성 착취의 전형적인 증거인 한편, 성매매는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여성 억압의 제도적·경제적·성적 모델이다. 억압자들에게 성적 차이, 인종적 차이는 백인 남성과는 다른 모든 여성과 유색인들은 타자이며 열등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여기에 성적 탐닉에 빠져 있는 사회에서 여성을 섹스화된 몸으로 환원하는 것의 심각성이 있다. 여자가 무엇을 하든 또 누구이든 상관없이 여자는 그렇게 여겨진다. 피억압자들을 생물학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표현함으로써, 차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간으로부터 인간성을 빼앗는다. 해외주둔 미군 병사들의 여성묘사에서 인종차별적 또는 성적 차이로 동양인, 유색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동양인에 대한 경멸적 호칭으로 잘 알려진 slope, slant 등 인종차별적 용어를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미군들은 한국에서 모든 여성을 moose, 남베트남 지역에서 house-mouse, 필리핀에서는 LBFM(Little Brown Fucking Machine: 쌀로 힘을 내는 작은 갈색 섹스기계)라고 불렀다.¹⁴⁾ 베리는 사회의 성적 탐닉 상태를 남성의 지배의 정치적인 성과로 본다. 그리고 성 차별주의와 함께 지배는 성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여성의 몸에 전달된다. 섹스가 대상화되고 인간이 단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매개물로 환원될 때 성적 지배는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이것이 성매매의 기본 토대이고 성의 성 매매화를 통해 성매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또한 베리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사회적으로 구성해가는 거리두기, 이탈하기, 분리하기, 탈신체화 등의 네 가지 단계로 설명한다.¹⁵⁾

14) 산드라 스테르반트, 브렌다 스톨츠퍼스, “하나의 이야기 속에 서로 다른 실마리-해석적 소론”, 김윤아 옮김, 『그들만의 세상-아시아의 미군과 매매춘』, 잉걸, 2003, 408~409.

성매매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성에 대한 착취이다. 상품화는 대상화의 극심한 형태 중 하나인데, 성매매 속에서 상품화는 마케팅을 통해 섹스를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결국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그들의 자아로부터도 분리시킨다.

첫째는, 거리두기(distancing)의 단계이다. 성매매 성관계, 성매매 행위는 여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 즉 자신에게 고유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정체성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방법을 그 성매매 행위로부터 떨어뜨려 거리를 두게 하는 전략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로부터 분리된 성매매 피해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거리 두기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성매매의 복잡한 그물망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만든다.

둘째는, 이탈하기(disengagement)의 단계로, 이탈하기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중요한 전략이다. 성매매라는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수반되는 상품의 교환에서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감적인 거리를 만든다고 보고했다. 이탈하기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이다. 이것은 성매매의 섹스에서 핵심적인 것이다. 섹스는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상품으로 재생산되기 위해서 여성은 그곳에 있을 것과 ‘행위 하기’를 요구받는다. 여성의 입장에서 그것이 그들 안에서, 그들 위에서, 그들을 통해서 행해질 때 그들은 “그곳에 없다.” 그곳에 없다는 것은 그들이 구매자에 의해서 생겨난 성매매의 권력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다. 성적 권력 관계에서 여성의 몸을 통해 여성의 몸과 남성과의 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에, 여성은 이탈하기를 통해 자신의 진짜 자아와 하나의 상품으로서 섹스를 위해 사용되는 자아를 구분하기 위해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다.

셋째는, 분리하기(dissociation)의 단계이다. 한나 올슨은 성매매에서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남성의 자위행위”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섹스가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남성의 자위행위로 환원될지라도,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연인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환상을 가정하여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몰입한 것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사실 남성들은 자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처럼 행동하는 몸을 사는 것인데, 이러한 자아는 가장 해롭고 피해가 심한, 인종 차별적이고 성 차별적인 개념과 잘 맞아떨어진다. 성 착취와 마찬가지로 인종 차별주의도 성매매 산업의 토대이다. 성매매에서 유색인 여성은 자신의 일부로서 자기가 팔고 있는 몸으로부터도 역시 분리를 실행하는 것이다.

넷째는, 탈신체화(disembodiment) 및 가장하기(dissembling)의 단계이다. 성매매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정서적·성적으로 몰입하는 시늉과 기뻐하면서 스스로 바라는 것처럼 행동할 것과 상품을 거래하는 순간에 마치 진짜인 것처럼 대할 수 있는 시늉을 기대한다. 이것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이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성된 자아를 육체로부터 이탈시키는데, 그 안에서 종속되고 비인간화된 자아가 재구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자아와 거리를 두는 것은 탈신체화 하기 위한 것이며, 그때의 경험이 체화된 것처럼 행위 하는 것이 성매매의 섹스를 만들어 낸다. 자신을 비인간화하는 성행위 내에서 여성이 반응한다는 것은 정상적 섹슈얼리티가 가부장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험 속에서, 익명의 상품 교환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이고 성적인 모든 행동과 모든 연기를 포함한 이것이 바로 성매매이다.

15) 이하의 논의는 캐슬린 배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정금나·김은정 옮김, 삼인, 2002, 39~57 참조.

IV. 성매매와 관련된 윤리적 논점들

성매매 문제에 있어 필자는 ‘자율적 의사결정’ 및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성매매에서는 구타, 강간, 심지어 살인조차도 단지 직업상의 위험으로 간주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돈의 지불여부가 성매매 섹스와 강간 섹스를 구분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의 삶과 경험 안에서 그것들은 거의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어떤 성매매 여성은 “자신과 섹스한 후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거나 돈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으로 강간을 정의한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성매매 여성이 강간범에게 더 큰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섹스를 제공하였지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에 의한 섹스인 양 취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성매매는 남성이 산 섹스이고, 강간은 남성이 강취하는 것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에서 남성이 산 섹스는 그들이 강간으로 강취한 섹스와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강간은 난해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섹스의 경험이 동의냐 강제냐의 이슈로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성매매에 대한 남성 위주의 오해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남성들은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을 여성의 ‘동의’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국제 사회가 이미 성매매에 있어서 여성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무의미한 일이지만, 우리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의 자의 혹은 타의를 구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이중적인 시각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성매매 시장은 비밀리에 운영된다. 손님은 익명성과 비밀, 즉 자신들의 정체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매춘 여성이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한다. 성매매는 남성 위주의 소비자 시장이며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것도 성적 권력의 기본 토대이다. 여성의 의지, 여성의 선택 또는 여성의 ‘성매매자가 될 권리’라는 것에 여론이 집중적으로 조명됨으로써, 먼저 남성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매춘이 존재한다는 가장 일차적인 요소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율적 의사결정’과 반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멸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는 사회적, 경제적 체제의 왜곡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성매매 여성이 돈을 벌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통제, 착취하는 집단은 포주나 업주, 알선업자 등에 국한되지만, 성매매 여성의 존재와 수입에 기생하여 이를 착취하는 집단은 옷가게, 화장품 가게, 미용실, 포장마차, 호텔, 고리대금업자 등에까지 확장된다. 이들은 일종의 먹이사슬을 형성하여 성매매 여성이 성산업에 이용되는 것에 기식하고 있기 때문에, 성 산업을 유지, 보호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 성매매를 방해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성산업 주변의 먹이사슬은 성매매여성을 미모에 대한 투자나 퇴폐 문화에 쉽게 젖어들도록 부추김으로써, 결국은 경제적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성산업에 길들여지게 함으로써 더욱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다. 결국 성산업은 여성의 성매매 동기와는 별도로 성매매 여성을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성매매 여성은 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포주나 업주, 알선업자 등에 의해 직접 통제되는 경우가 많다.¹⁶⁾ 그런데 대다수의 성매매 여성이 포주, 업주, 알선자들을 착취적인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공생 관계로 인식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6) 성매매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에서는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명단을 공동 작성하여 관리하기도 했으며, 대정부 차원의 대책 요구와 시위 주도 등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고 한다. 매춘여성들은 감금이나 인신매매에 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이 극악한 착취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숙소를 제공해주고 목돈을 빌려주는 업주와 알선자, 포주에 대해 신뢰, 의리, 정 등의 긍정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착취자들은 효과적인 통제와 착취를 위해 매춘여성들이 가정에서의 학대나 성폭력 등으로 애정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폭력과 친밀한 관계를 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은 그들의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를 사적인 관계로 인식할 뿐 자신들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중간 착취자들은 남성 구매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이 화해도 못 받고 강간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뒤집어 씌워 소위 ‘벌금’을 받아내는 것이 다반사라고 한다. 이들 중간착취자들에게는 남성 구매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춘여성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기도 한다.¹⁷⁾ 이렇듯 여성의 성매매는 집착촌 또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둘러싼 복잡한 경제기반 아래 이루어진다.

사실 성매매와 관련된 인간소외와 인권의 박탈, 다양한 수준의 가족 공동체 및 인격적 붕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해 실상을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성의 상품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의 부조리와 억압구조,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실상이 여러 차례 공개되기도 하였다. 개인의 자율적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인격적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심각한 일들이 성매매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한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개선에만 맡길 수는 없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식과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첵 실링(Cheng Sealing)에 따르면, 한국 남성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기대 역할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청렴한 선비, 근대 의식을 가진 기독교인, 그리고 애국자로서의 군인이다. 유교적 전통과 기독교 윤리는 한국인을 국가의 과거와 미래로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해왔다. 유교적 가치는 한국인에게 과거의 유구하고 찬란했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는 한국이 근대 국가로 발전해 가는 데 필요한 비전을 제시해 왔다.¹⁸⁾ 또한 대략 2,00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성문제 있어서는 순결을 여성에게 요구되는 처녀성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기독교적인 죄라는 개념이 더해지면서 여성들에게 더욱 억압적인 성문화 및 성의식이 뿌리내리고 있다. 유교적 전통과 기독교 윤리 속에 녹아있는 여성의 순결 중시 풍조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양분법 즉 ‘창녀 대 부인’을 낳았다. 이런 태도는 남자들만의 의식이라는 명목으로 묵인되는 술, 음식, 성을 사는 행위를 용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남성성이란 무엇인가는 문제는 성윤리 및 기독교적인 성에 대한 이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이다. 리처드 마우는 『무례한 기독교』에서 “성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을 근본적으로 혼동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성적 순결에 대해 임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지도자는 다른 책임 영역에서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

17) 홍성호, 이지혜, “매춘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 -인권유린의 실태와 대안을 중심으로-”, 『이화행정』 10호, 2001. 참고.

18) 첵 실링, 앞의 글, 259~260.

다. …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적 가치관이 한 사회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우리는 성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와 해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세기의 기독교는 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행위는 죄악으로 보기도 했지만, 성서를 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비교적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성서는 인간의 성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일부라는 것이다. 둘째로, 인간의 성은 선한 것이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성관계는 두 사람 간의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하나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성관계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데, 재생산과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기능이다. 다섯째로, 성충동은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자발적인 한계 설정과 절제의 이행이야말로 성충동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이다. 성서는 우발적이거나 난잡한 성행위를 금지하고 결혼에 있어서도 성관계는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결혼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또 어떤 종류의 강제적인 관계도 인격적 존엄성의 훼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요소들의 종합적 판단에 있어서 행위나 결과 자체 보다는 동기와 태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매매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이의가 없다. 물론 성매매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필요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적 가치판단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과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제시는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본 글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기도 하다. 아마 가장 진부하고 순진하게 보이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은 “성매매, 가는 사람 없으면 팔리는 사람도 없다”는 구호 속에 담겨 있다고도 생각된다.²⁰⁾

성매매의 문제는 남성의 문제이며 또한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성매매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성매매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성매매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성매매를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²¹⁾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 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 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도록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 잡는 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성차별 등을 개선하는 일이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9) 리처드 마우, 홍병룡 옮김, 『무례한 기독교』, IVP, 92~93.

20) 현재 한소리회나 한국교회여성연합, 등등 많은 여성관계 NGO들이 ‘성매매 나부터 stop’을 외치며 “성매매 안하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캠페인 하며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21)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매매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집단으로 가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미혼모, 결혼가정 자녀, 빈곤여성, 결혼 과정 여성 등을 상정하고 이들에 대한 긴급전화, 상담서비스, 성교육, 의식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히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유흥업소 종사 여성, 음식, 숙박업소 종사 여성들을 위험집단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해서는 앞의 일반집단에게 하는 서비스에 덧붙여 현장지원 서비스와 일시보호 및 생애전환 서비스, 직업훈련, 약물 및 알콜 개입 서비스 등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개인 보건 서비스와 탁아 서비스를 추가하여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 캐슬린 배리 지음, 정금나, 김은정 옮김,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출판사, 서울, 2002.
- 이성숙 지음, 『매매춘과 페미니즘/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책세상, 서울, 2002.
- 한은경 · 이동우 공편, 『미디어의 성과 상』, 나남출판, 서울, 2003.
- Martha C. Nussbaum, *Sex and Social Justice*, Oxford, New York, 1999.
- Mark D. Jordan, *The Ethics of Sex*, Blackwell Publishers, Cambridge UK, 2002.
- Judith Plaskow, *Sex, Sin and Grac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America, 1980.
- Susan Frank Parsons, *The Ethics of Gender*, Blackwell Publishers, Cambridge UK, 2002.

K C I